

문의사항

김민철관세사 T/ 02-6011-3072 메일/ mckim@esein.co.kr

세인 소식지 www.seincustoms.com

2015.12.01

## 「관세법 시행규칙」개정

## 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- 개정사유
  - >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
  -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일치
  - 중소 · 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
  - >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
- 시행일자 : 2015. 12. 01.

## 2. 주요 개정내용

- □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 (안 제45조, 제79조의2)
  -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과,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물품가격 미화

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시킴.



문의사항

김민철관세사 T/ 02-6011-3072 메일/ mckim@esein.co.kr

## 세인 소식지 www.seincustoms.com

2015.12.01

- □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(안 제43조)
  - o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,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
- □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(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)
  -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「관세법」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30% 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ㆍ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%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,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,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.
- □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(안 제48조)
  - <u>이사물품 중 보석 · 진주 · 별갑 · 산호 · 호박 · 상아 등 물품의</u> <u>면세기준금액</u>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<u>500만</u> <u>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</u>.